

# 일반공급 안내문 (1)

##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

1  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19세 이상인 세대주, 세대원 등(동거인, 외국인)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
2   군산시 및 전북 거주자 청약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 발생 시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</li> </ul>
3   다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
4 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청약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

## 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

구분	비고	
1순위	주택청약종합저축	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
	청약예금	
	청약부금(85㎡ 이하 청약가능)	
2순위	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	

##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

구분(전용면적)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군산시 해당)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
모든 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.

##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

군산시 및 전라북도 주소전입일	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
청약저축 → 청약예금 전환	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(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)
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	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(큰 주택규모 청약 시,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)
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	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
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	청약접수일까지 충족

## 일반공급 1순위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[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.]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 단,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</li> <li>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(군산시)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(1순위 및 2순위)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p>1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 : 가점제 (40%) 및 추첨제 (60%) 적용,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.</li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. (가점제 접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</li> <li>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</li> <li>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.</li> <li>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/ul>
	<p>전용 85㎡ 초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용면적 85㎡ 초과 : 추첨제 (100%) 적용</li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</li> <li>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</li> <li>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/ul>
	<p>2순위 전 주택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·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(포함)에 가입한 자</li> </ul>

# 일반공급 안내문 (2)

##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 (또는 유주택자)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▶ 무주택자에 한함 -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분리세대 or 단독세대 일 경우 제출) - 혼인관계증명서 (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)
		1년 미만(무주택자에 한함)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		
② 부양가족 수	35	0명	5	4명	25	-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-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2) 만 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※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-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됨)
		6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		
총점	84	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+②+③				

※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. (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)

※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.